

대전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217341 판결 [건물명도 등]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21734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89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C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현

변론종결 2024. 3. 14.

판결선고 2024. 4. 18.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891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430.775㎡ 및 2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ㅈ, ㅊ, ㅋ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부분 364.61㎡를, 피고 E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430.775㎡ 및 2층 393.085㎡를 각 인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은 34,628,2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는 48,444,040원 및 2023.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2 목록 기재 영업인허가에 관하여, 피고 E는 별지3 목록 기재 영업인허가에 관하여 각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피고 회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G 지하상가 연결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주요도로의 통행이 제한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만일 원고로부터 위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음식점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G 지하상가 연결공사'가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었던 점, ② 위 공사는 착공 이후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출입도로 봉쇄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설승원, 판사 윤지숙, 판사 신일수

별지 1

목 록

대전 중구 H, I, J, K, L

[도로명주소] 대전 중구 M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1층 근린생활시설(점포) 430.775㎡

2층 교육연구시설(학원), 근린생활시설(점포) 393.085㎡

3층 업무시설(사무실) 399.645㎡

4층 교육연구시설(정보처리학원) 416.925㎡

5층 교육연구시설(정보처리학원) 417.565㎡

6층 교육연구시설(고시학원) 417.565㎡

7층 업무시설(사무실) 417.565㎡

8층 업무시설(사무실) 교육연구시설(학원) 417.565㎡

9층 교육연구시설 및 외국어학원, 업무시설(사무실) 417.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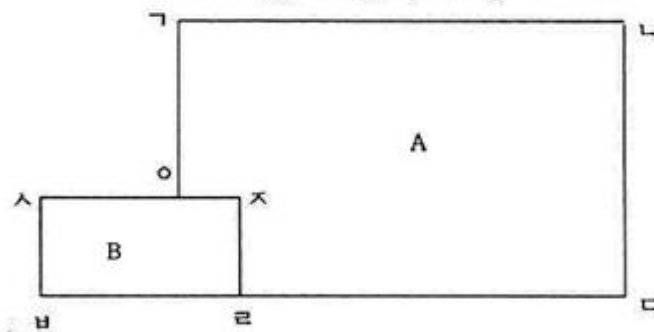
10층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417.565㎡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노래방), 보일러실, 전기실 472.96㎡

지하 2층 주차장 206.20㎡

도 면

2층 도면의 표시



별지 2

영업인허가의 표시

업종	일반음식점
인허가 번호	N
업체명	O
영업소재지	대전 중구 M, 1층
대표자	P

별지 3

영업인허가의 표시

업종	일반음식점
인허가 번호	Q
업체명	F
영업소재지	대전 중구 M, 2층
대표자	E. 끝.

